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전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

A. 일반정보

질의사항 2항에 대한 답변

1. 정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사법구제가능성을 위해 제5차 국가보고서 문단 7-9에서 기술한 교육,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 부록 표 1-3

2. 입법부는 제4차 최종견해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법안 발의 현황과 그 내용 등을 제공하는 등 제5차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하였다.

질의사항 3항에 대한 답변

3. 이전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조치는 제5차 국가보고서에 기술하였고, 보고서 제출 후 이루어진 조치들은 본 답변서와 부록에 기술하였다. 대한민국에는 각 협약을 소관하는 부처가 협약의 이행, 보고, 후속조치를 전담한다.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 이행 및 점검 과정에 참여한다.

※ 부록 4

질의사항 4항에 대한 답변

4. 정부는 2023년 사회권위원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관련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¹⁾을 실시하였다. 2025년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질의사항 5항에 대한 답변

5. 정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향유와 관련해 성별, 연령, 장애 여부, 소득 수준, 지역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²⁾ 수집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 kosis.kr)을 통해 공개되어 있고, 한국어 및 영어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또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동성 배우자를 가구원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항목이 개편되었다.

1)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270000-202300070>

2) 예를 들어,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노인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분리통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사항 6항에 대한 답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6.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2035년까지 53~61%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다. 2024년에 2018년 순배출량 대비 12%를 감축하였으며, 특히 전력 부문에서 약 23%를 감축했다. 2035 NDC 후속조치로 2035년까지의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대책³⁾을 담은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 산업계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투명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부록 표 5

질의사항 6(a)항에 대한 답변

7.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실태와 정책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⁴⁾, 2026년부터 전국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였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이하 '제4차 대책')⁵⁾에 취약계층 지원내용이 포함되었다.

※ 부록 표 6

질의사항 6(b)항에 대한 답변

8. 제4차 대책에는 18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기후위기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 혁신과 취약계층 보호 등 기후위기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부문의 대책을 담고 있다. 재정투입 규모는 연간 약 7.9조('25, 3차 기준)에서 8.8조('26, 4차 기준) 수준으로 집계되며, 매년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질의사항 6(c)항에 대한 답변

자연재해 대비

9.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또한 재난관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훈련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필요한

3) 재생e 보급 가속화, 다배출업종 탄소감축 기술개발, 수송부문 전동화 로드맵 수립, 히트펌프 보급 확대, 저GWP 냉매물질 전환,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대 등

4) 2회 실시('24년 서울·부산, '25년 서울·부산·강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1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2011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 및 정책도 운용하고 있다. 민간 분야의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 자율방재단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재난 위험 경감 조치

10.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도 분석, 개발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도 사전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풍수해, 지진, 폭염, 한파 등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도 별도 운영 중이다.
11. 정부는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재난분야 전체적으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재난관리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예산도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하는 등 재정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의사항 6(d)항에 대한 답변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총괄로 4차 대책 수립을 위해 2025년 8차례의 관계부처 실무협의회를 추진하였고, 2025년 12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
13. 평시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은 중앙정책기관 및 관계기관의 단체의 장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비상설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며, 중대본에서는 재난의 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B. 규약 일반 규정에 관한 사안(제1조 내지 제5조)

가용자원의 최대 한도

질의사항 7항에 대한 답변

14. 부록 표 7-14
15.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공공사회보장지출은 338.2조(GDP 대비 15.2%)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다.

비차별

질의사항 8(a)항에 대한 답변

16. 2026년 3월 기준 제22대 국회에는 2개의 의원안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국회 논의에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국정과제⁶⁾에 따라 ‘혐오·차별 방지 법제화 검토 및 공론장 마련 추진’에 참여할 계획이다.

질의사항 8(b)항에 대한 답변

17.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등이 인정된다.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⁷⁾ 지침상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 동반자 집단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동성·동반자 집단 간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동성 커플에 대해 사실상 혼인관계인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보험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8. 다만, 유족연금⁸⁾의 경우 「국민연금법」에서는 배우자의 적용에 있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판단에 있어 공적자료를 통해 혼인의 실질을 판단하고 있고, 이는 민법상 혼인관계 해석을 바탕으로 적용된다. 또한,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과의 친족관계, 생계를 의존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격이 있으면 인원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이 가능한 건강보험제도와 제도적 차이가 존재한다. 유족연금상 배우자 확대 여부는 민법상 배우자 개념의 해석,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제도와의 형평성, 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조성되었을 때 논의하도록 하겠다.

질의사항 8(c)항에 대한 답변

사회보장접근

19. 제5차 국가보고서 문단 28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일정 요건 외국인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령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도 급여 대상자로 포함한다. 정부는

6)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 5년의 임기동안 추진할 국가 운영의 핵심 실행 과제를 의미한다.

7) 대법원 2024.7.17. 선고 2023두36800

8) 유족연금은 가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질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제도로, 국민 전체가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기에 그 지급과 관련된 요건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설정된다.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 자녀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급여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⁹⁾을 2023년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 직장에서 근로를 하거나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적용하고 있다.¹⁰⁾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G-1-6)와 그 가족(G-1-12)은 2021년 1월부터, 계절근로자(E-8)는 2024년 10월부터 지역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일부 운영 기준을 내국인과 달리하고 있다.¹¹⁾ 이는 건강보험제도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¹²⁾ 정부는 외국인 건강권 보장을 개선하고자 급여가 제한되는 체납 횟수 기준을 3회로 상향하여 2025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6개월 이내 체류기간 연장 허가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인도적 사유 및 납부 노력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 부록 16

주거

21.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른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에 국민주택¹³⁾을 특별공급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

22.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 유입 증가를 반영하여 다문화 정책 대상을 외국인 가정 등 '이주배경가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센터 내 이주배경가족 전담 관리자 배치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언어교육, 학습, 소통·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질의사항 8(d)항에 대한 답변

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인종·성차별적 내용의 표현은 금지되고 있다. 2025년 11월, 정치적 이득을 위한 혐오 표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배포하였다.

9) 2024년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10)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 시 외국인 등록 의무화. 단, 체류자격이 영주(F-5), 결혼 이민(F-6)인 경우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1) 가입자 평균보험료 하한 적용, 배우자, 미성년 자녀 외 세대인정 범위 제한 등

1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또한 해당 규정들이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확인 (2023.9.26. 2019헌마1165) 한 바 있다.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24. 온라인상 혐오표현 관련,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통해 삭제·차단 등 대응하고 있다. 2026년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혐오표현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불법정보’에 포함¹⁴⁾되어, 시정요구 및 시정명령 집행체계가 마련되고 플랫폼사업자의 조치의무가 법제화되었다.
25. 정부는 혐오대응 강화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하겠다.

성평등

질의사항 9항에 대한 답변

사업장 간 임금 비교

26. 정부는 2025년부터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등의 제도설계를 추진하여, 공공부문¹⁵⁾과 민간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성별 임금·고용 현황을 공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시항목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포함해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에서의 성별 고용구조와 차별요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공공보육인프라 강화

27. 정부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12세 이하 아동)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아이돌봄기관 등록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¹⁶⁾

※ 부록 표 17

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¹⁷⁾ 기업의 인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기업의 선호를 반영한 인센티브¹⁸⁾를 발굴·지원하고, 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가 신설되어 ‘공공연하게 인증·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되었다.

15) 공공부문은 현재 성별 임금·고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6)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5.4.22.)·시행(‘26.4.23.)

17)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24년 6,502개사 → ‘25년 6,971개사

18) 세무·관세조사 유예, 주요 은행 금리우대 등

정하고 있다.

※ 부록 표 18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조치

29. 정부는 '제4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5~2029)¹⁹⁾에서 정책대상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으로 확대하여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0. 여성의 경제활동 권리 강화 및 사회적 관점 전환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이유로 경제활동 참여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²⁰⁾
31.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복귀 지원 강화, 가족친화인증제도 등 기혼·중장년 여성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부록 표 19-21

육아휴직 제도

32. 대한민국의 여성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지만²¹⁾, 남성의 일·육아지원제도 활용률 저조, 출산·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30~40대를 거치면서 경력단절현상(M-Curve)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33. 육아휴직 제도는 법률상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상대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육아휴직자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육아휴직 수급자 중 남성과 중소기업 비중이 역대 최대로 집계되었다.²²⁾
34. 정부는 일·육아지원 제도의 예산을 2024년 2.5조원에서 2025년 4.1조원으로 증액하였고, 중소기업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일하는 부모와 기업이 제도를 알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

※ 부록 표 22

질의사항 10항에 대한 답변

1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 수립

20) 2026. 7. 1.부터 시행 예정

21) 여성경제활동참가율('23년): OECD 평균 63.2%, 한국 61.4%, 일본 73.3%, 미국 67.5%, 독일 73.6%

22)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전년 동기 대비 37.0% 증가하였고, 25.1~9월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 (36.8%)이 남성, 중소기업 사용 비중 58.2%를 차지한다.

성별대표성

35. 정부는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의 고위직, 관리자 중 여성 비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또는 지방정부 소관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²³⁾하고, 매년 현황 점검 및 개선권고를 하고 있다.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지방정부의 관리직 공무원의 경우 2024년에 2027년 여성 임용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다.

※ 부록 표 23

36. 2024년에는 여성정치발전비의 사용 용도를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용도 외 사용 시 용도를 위반한 국고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감액)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정치발전비 중 인건비 지출 총액이 나머지 지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여성정치발전비로 보지 않도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규정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부록 표 24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젠더기반폭력 대응 조치

37. 2024년 12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 및 신분 비공개수사를 가능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의 절차 및 방법,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시설 지정 등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38. 정부는 사이버성폭력범죄 시·도청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 등을 집중단속 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확인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차단 요청 등을 하고 피해자에게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다.²⁴⁾ 이에 따라 경찰청에 신설된 전담팀에서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성착취물 등 URL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9,004건, 국내·외 사업자에게 10,657건 삭제·차단 요청하였다.

※ 부록 표 25-27

39.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여 삭제지원 대상을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로 확대하고, 2025년 6월 학교·군부대 등 관계기관의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2025년 12월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

2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24) 2025. 6. 21. 시행

추적 기술 도입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자동 탐지·신고를 위한 AI 기반 선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2025년 9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하였고, 스토킹·교제폭력 긴급 주거지원 시설 유형을 다양화하였다.²⁵⁾ 또한, 2026년 5월 디지털성범죄 총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40.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검찰청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경제적 지원(생계비·치료비 등), 스마일센터 심리상담,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피해자를 위한 법률서비스²⁶⁾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 부록 표 28-30

41.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내 젠더기반폭력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등 자체 조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 가해자 조치 등의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주요 소통 수단으로 삼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특성상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학생 대상 교육을 강화하였다.

※ 부록 31

4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촬영물 의심 정보의 경우 사업자가 임시조치 후 심의 신청을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시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기한을 24시간 이내로 명시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 비교·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딥페이크 판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겠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43. ‘비동의 강간죄’의 도입 문제는 국내 성폭력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 입증 책임의 원칙 및 형사절차상의 부담과 관련한 쟁점,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방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고려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C. 규약의 구체적 규정에 관한 사안(제6조 내지 제15조)

25) 고정형쉼터 → 고정형쉼터와 공유숙박시설 등

26)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한 법률상담·소송구조 등, 법률홈닥터 통한 법률상담·유관기관 연계·법률문서 작성 조력 등

노동권

질의사항 11(a)항에 대한 답변

44. 정부는 보호 중심에서 전환·통합 지향의 고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공공(3.8%) 및 민간(3.1%) 사업장에 의무고용율을 부과하고 부담금, 명단공표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개선한 경우에 공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단공표 제도를 변경하였다. 또한, 「장애인고용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상향할 예정이다.
4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장애인 고용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i) 발달·중증 장애인 맞춤형 훈련·직무개발,
 - (ii)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 인턴 등),
 - (iii) 고용유지 및 적절한 직무 지원을 위한 인적지원(근로지원인),
 - (iv) 물적지원(보조공학기기, 출·퇴근비용 지원)

2026년 기준으로 총 1조 137억 원의 장애인고용 예산을 편성하였다.

46.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반 사업장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장애인복지법」 상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의 개편을 위해 정부·장애인단체·학계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관련 검토를 지속해 왔다.
47.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전환지원 사업을 신설하였다. 이후 다수의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전환 촉진수당을 지원받으며 전환을 위한 훈련에 참여하였고,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시장으로 전환하였다. 2026년에는 예산을 확대하여 소속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환에 성공한 직업재활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환성공지원금 지원도 신설하였다.
48. 정부는 AI 훈련 기회 확대, 기업의 의무고용률 이행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해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

질의사항 11(b)항에 대한 답변

이주노동자

49.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 및 지역 정착을 위해 다국어 상담원, 노동 관련 권리 구제 지원, 한국어 교육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0.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노사와의 의견 교환 및 현장 실태 분석을 실시했다. 노사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026년 상반기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1.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간 근무를 통해 숙련도가 축적된 비전문취업(E-9)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장기체류 및 가족 초청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장기 정주가 가능한 취업비자(E-7)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질의사항 11(c)항에 대한 답변

52. 정부는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령 개정, 학교 전담노무사 위촉, 현장실습 노동인권·권익 보호와 산업안전 보건교육 및 현황 점검, 현장실습 참여·선도 기업의 사전 현장실사 및 기업코칭 실시, 현장실습 참여기업 기준 강화, 참여주체별 맞춤형 현장실습 운영 공통매뉴얼 개발, 교원역량 강화 연수, 현장실습 컨설턴트 운영 등 여러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산업체에 대해 '기술지도, 안전 보건체제구축' 등 산업재해예방체계 구축 또한 지원하겠다.

※ 부록 표 33, 34

질의사항 11(d)항에 대한 답변

53.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²⁷⁾. 또한, 2024년 2월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주 30시간 미만)을 하더라도 소득금액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지 않고 감액지급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인상하였다.²⁸⁾ 다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큰 자를 선별하기 위해 2년 내 취업경험 등을 구직촉진수당 요건에 포함하고 있으나,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부록 표 35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질의사항 12항에 대한 답변

최저임금

54. 최저임금위원회²⁹⁾는 근로자의 적절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27) 2024년 10,034억원(예비비포함) → 2025년 10,109억원(추경포함) → 2026년 10,128억원

28) 월 50만원 → 60만원

29)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됨

결정될 수 있도록 비혼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 분석자료를 기초심의자료로, 가구원 수별 생계비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경제시장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며, 심의 자료와 논의 결과는 심의 후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55. 저임금 근로자 비중 감소, 임금 5분위 배율 축소 등 임금격차가 완화하는 추세이다.

※ 부록 표 36

플랫폼 노동자 및 비전형 노동자의 노동보호제도

56. 정부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과 함께 모든 노무제공자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법에서는 공정한 계약, 차별금지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플랫폼 및 비전형 노동자도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핵심 노동보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10월 기준,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 87.2만명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다.

57.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2020년)에서 15개로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고 민간 협·단체의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고, 택배 등 야간작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제도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비전형 노동자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플랫폼 및 비전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민간 기구 운영 등 재정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질의사항 13항에 대한 답변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부문 임금격차 및 근로조건 개선 조치

58.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수립하여 이행 중이다. 또한 2025년 12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였다.³⁰⁾

※ 부록 37

근로조건 점검 및 근로감독

59. 정부는 원하청 상생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 차별 예방 컨설팅을 사업장에 제공하여

30) 주요 개정 내용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도 추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근로조건을 진단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60. 정부는 매년 노무관리 취약 가능성이 높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5인 미만 포함)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³¹⁾ 2025년 20인 미만 사업장 7,294개소(5인 미만 3,254개소, 44.6% 포함)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기초노동질서³²⁾ 중심으로 컨설팅을 포함한 현장 노무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기준으로 현장 노무 지도를 실시하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 지도·점검과 함께 관련 협회 및 단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업하여 간담회,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노동3권

질의사항 14(a)항에 대한 답변

61. 정부는 2025년 9월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였다.³³⁾ 이에 따라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62. 또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여, ①사업경영상의 결정 중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거나³⁴⁾, ②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³⁵⁾도 노동쟁의에 해당되도록 하였다.
63. 한편,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삭제하였다.

※ 부록 표 38

질의사항 14(b)항에 대한 답변

64. 「노동조합법」 제4조³⁶⁾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31) 2025년 30인 미만 사업장 19,407개소(5인 미만 사업장 2,721개소, 14% 포함)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32) 임금체불, 최저임금,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교부 등

33) 2026. 3. 시행

34) 정리해고 등

35) 임금·근로시간·안전보건·재해보조 등 관한 명백한 단체협 위반

36) 「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대법원도 노동 사건에 대해 「형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지위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단체교섭이 제한되고 쟁의행위의 목적상 불법이 되어 과도한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었으나,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사항을 포함하였다.

65.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에게 실제 책임 부분보다 과도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제3조를 개정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록 표 39

66. 나아가,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더라도 개별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 지위·역할,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위·정도 및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입법화하였다.

질의사항 14(c)항에 대한 답변

67. 제5차 국가보고서 문단 61, 62

질의사항 14(d)항에 대한 답변

68. 제5차 국가보고서 문단 59

69.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이 아니며, 쟁의행위로 인해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국가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수여가 있는 경우에 사회재난이 된다.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법정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2024년 시행령 개정 전에는 ‘보건의료 사고’ 등 재난 유형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령 명확성 원칙 위배와 법률과 시행령상의 용어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롭게 규정을 신설한 것이 아니다.

사회보장권

질의사항 15항에 대한 답변

기초생활보장제도

70.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80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³⁷⁾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인상된 생계급여 월 최대지급액³⁸⁾도 최초로 200만원을 상회하였다.
71. 2024년 1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상향 조정하여 재산 기준을 개선하였다. 2025년 1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기준³⁹⁾을 상향하였다. 2026년 1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인 부양비를 폐지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72. 지난 18년간 물가·진료비 상승에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정액(1~2천원)으로 동일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이용에 비례하여 외래 본인부담이 달라지는 정률제로의 변경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인상⁴⁰⁾, 진료건당 의료비 상한선 설정⁴¹⁾, 중증치매·조현병 외래·약국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전히 취약계층 의료비 증가 우려가 제기되어, 개편 절차를 중단하고 재검토 중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73.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법상 국고지원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있다.
74. 또한 대상별·생애주기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 및 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고, 신규 지정되는 희귀질환 대상으로 산정특례 적용 확대 및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75.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을 2030년까지 35%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37) 기준중위소득(4인가구) : 609.8만원('25) → 649.5만원('26)

중위소득 증가율 : ('18) 1.16% → ('21) 2.68% → ('23) 5.47% → ('26) 6.51%

38) 생계급여 월 최대지급액(기준중위소득 32%, 4인가구) : 207.8만원 (26.1.1.시행)

39) 연소득 1억 → 1.3억, 일반재산 9억 → 12억

40) 외래 본인부담 지원금 월 6천원 → 월 1만2천원

41) 외래 2만원, 약국 5만원

76.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정지원을 대비 과소지원액을 고려하여 향후 안정적인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겠다.⁴²⁾

질의사항 15(a)항에 대한 답변

77. 정부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5년마다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

질의사항 15(b)항에 대한 답변

연금제도 내 격차 해소

78. 정부는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⁴³⁾ 또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026년 1월 1일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79. 청년,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의 연금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출산·군 크레딧⁴⁴⁾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질의사항 15(c)항에 대한 답변

80.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앞선 20 문단 참조.

81.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재외동포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 이외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부록 표 40

가족 및 아동의 보호

질의사항 16항에 대한 답변

82. 정부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위기 아동 발굴 사업 등을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후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가정에도 상담과 교육 등의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

42) 국고지원 현황: 2025년, 12.6조원 → 2026년, 12.7조원

43) 저소득 근로자, 일용근로자, 농어업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대상

44) (출산크레딧) 둘째아 → 첫째아부터 12개월 추가 산입, 상한선 폐지
(군복무크레딧) 6개월 →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산입

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3.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고난도 피해사례에서 피해아동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거점 심리지원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피해아동, 가정의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가족 통합적 개입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전문 심리치료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84. 해마다 10여회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합동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응인력의 법적 전문성 및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합동교육을 통한 기관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85.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각 지방 검찰청에서 열리는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학대 조기대응 및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질의사항 16(a)항에 대한 답변

86. 정부는 아동이 부득이하게 원가정과 분리되어 보호되더라도 그 기간을 최소화하고 가정형 보호를 우선시하는 ‘가정형보호 우선’ 정책 원칙을 추진해왔다.
87. 2024년 기준 국내 위탁가정 수는 7,623가구, 위탁아동 수는 9,355명이다. 광역 단위로 전국 18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가정에 대해 사례관리 및 보수교육을 진행하며, 양육보조금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기반한 현금지원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위탁아동의 상해보험료⁴⁵⁾ 및 심리검사·치료비⁴⁶⁾를 지원하고, 학대피해·영아·ADHD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전문가정위탁’ 제도를 통해 적절한 위탁역량을 갖춘 위탁부모를 선정 및 양성하고 전문아동보호비⁴⁷⁾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88.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가정위탁 모집 및 책정관리의 국가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국비지원, 양육보조금 권고 준수 의무 부여, 광역 책임의 가정형보호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질의사항 16(b)항에 대한 답변

89.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후 사후처벌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⁴⁸⁾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45) 1인 68,500원 내외

46) 2025년 기준 검사 1회 20만원, 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47) 월 100만원

48) 2024. 1. 1. ~ 2025. 12. 8.까지 약 21만 1천명의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약 5만 8천명의 가정에 복지서비스를

활용한 AI 모형을 통해 발굴한 위기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며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한다.

90. 매년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과 주간(11월 19일~25일)을 기념하는 등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문화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질의사항 16(c)항에 대한 답변

91.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포함한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재발을 방지한다.⁴⁹⁾ 최근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여 행위자를 가중처벌하고,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변경 심판 청구를 의무화 하였다.⁵⁰⁾ 또한 피해아동을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신설하고⁵¹⁾, 이를 위한 집행절차를 하위법령에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아동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범한 경우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92.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발생 시 경찰은 학대 혐의를 확인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왔으나, 2025년 9월부터는 사건 발생 즉시 지방자치단체 통보하도록 지침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 발생 현장에서 생존 아동이 발견되면, 경찰은 학대 혐의와 관계없이 유관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해당 아동 및 가족이 적시에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93. 생존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기본 생계·의료 급여 외 아동양육비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94. 한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수 있도록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26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질의사항 17항에 대한 답변

연계, 297명에 대해 학대 의심으로 신고 및 수사를 의뢰하였다.

49)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9조, 제47조

50) 동법 제4조 제3항, 제9조 제1항

51) 동법 제12조 제1항 제5호

95. 정부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민간임대주택 등으로의 이주를 지원 중이며, 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해 현장에서 대상자를 선제 발굴하고, 이주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있다.
96. 민간 임대 시장의 임대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연 4만호 규모로 매년 신규 공급 중이며, 매입형·전세형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 중이다.

※부록 표 41

질의사항 18 항에 대한 답변

주거법과 정책 체계

97.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임대주택의 공급, 주거환경의 정비,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숙인’ 정의에 만 18세 미만 포함 여부

98. 노숙인 연령 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소관 부서가 중첩되어 오히려 관할권 문제로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적기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청소년 노숙인은 거리 순찰 활동을 통해 발견될 경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저소득인 경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경제적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에 임대료 상한제나 주거 적정성 기준의 적용 여부

99.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표준임대료 및 보증금 기준을 마련하여 임대료 상한을 두고 있으며, 각 임대료는 각 지역의 임대 시세와 공급 대상별, 소득구간별 계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또한 보증금·임대료 제한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공공임대주택은 최소주거기준 등 주거 적정성 기준에 맞게 공급 중이다.

※ 부록 표 42

건강권

질의사항 19항에 대한 답변

공공의료

100. 정부는 지역 의료 공급체계, 사업계획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 내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의하겠다.
101. 정부는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장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중이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컨설팅 등 경영혁신 노력을 지속 지원하고, 지불체계 개편도 검토하겠다.
102. 의료 인력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유인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및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생활 지원

103. 정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정부 예산반영, 2022~2026)'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 평가 및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장애계·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및 유사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건강

104. 정부는 매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정신건강정보포털을 운영하여 정신질환,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 제공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게시하고 있다. 또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⁵²⁾을 수립해 이행 중이며, 2025년 12월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가 출범하였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

105. 2023년 이후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2025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⁵³⁾ 102명을 증원하였고, 2026년 위기개입팀 인건비 단가를 연 38.32백만원에서 46.33백만원으로 약 21% 인상하였다.

52) (주요 내용) 자살시도자 대상 즉각·긴급개입 강화, 범부처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현장 대응체계 강화, 과학적 정책 기반 강화 등

53)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과 함께 출동하여 정신건강 상태 평가, 의료기관·지역사회 연계 등 업무를 수행한다.

106.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⁵⁴⁾ 예산을 2024년 327억에서 2026년 344억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정신건강⁵⁵⁾ 관련 예산은 2023년 4,432억원에서 2026년 5,53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질의사항 20항에 대한 답변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107.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보호입원, 행정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입원 2주 이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진단, 입원 1달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두고 있다. 자의 입원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하며, 입원 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부록 표 43

미등록 이주민 및 난민의 보건 의료 접근

108. 정부는 난민신청자 등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기본적 지원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 안내를 강화해 오고 있다.⁵⁶⁾ 특히 난민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및 긴급 의료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109. 정부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 및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 난민 신청자와 18세 미만 자녀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⁵⁷⁾

※부록 표 44

임신중절 비범죄화 및 의료체계 통합

110. 임신중절 비범죄화 논의 과정에서 법체계와의 정합성, 임신중절의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6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시작되었고, 추가 개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는바 관련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

111. 「모자보건법」 제14조⁵⁸⁾에 해당하는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54) 마음안심버스 운영 확대, 공공병상 확충, 회복지원사업 확대 등

55) 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등

56) 2023년 3월에는 난민신청자 및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북을 특수외국어(아랍어, 미얀마어, 마인어, 힌디어, 이란어)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하여 비영어권 난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2023년 10월에는 생계비·취업허가·주거·의료비·교육 등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다국어 처우 안내 리플릿(아랍어, 카즈하어, 힌디어)을 제작·배포하였다.

57) 원칙적으로 외래진료는 지원대상이 아니나 입원·수술과 연계되는 외래진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58) 부모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 부모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 친족·인척간 임신, 모체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2024년, 2,637건)하고 있다. 모든 경우의 인공임신중절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⁵⁹⁾

교육권

질의사항 21항에 대한 답변

교육접근성 및 교육성과 불평등 해소 조치

112. 교육부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⁶⁰⁾ 시·도교육청에서는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학생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0~5세 영유아, 장애 영유아 및 저소득층 유아 등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에게 대학 졸업까지 학업장려금을, 재난·재해·폭력 피해 등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중단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부록 표 45

사교육 의존 현황 및 대비 조치

113. 정부는 사교육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월평균 사교육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⁶¹⁾을 검토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26년에 처음으로 유아사교육비조사를 실시하여 2027년부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부록 표 46

114. 정부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에 4세,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대상 학원의 모집시험 등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2026년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함께 영유아시기 놀이교육의 가치를 알리는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질의사항 22항에 대한 답변

115. 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⁶²⁾에

우려가 있는 경우

59) 국정과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추진 중

60)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개인별 바우처로,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는 학교에 실비로 지급한다.

61) 지역규모, 학업성취도, 학교 계열구분 등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주요 과제로 포함하여 수립·추진 중에 있다. 이에 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을 시범운영 하고 있다(‘26. 3). 2026년 4월부터 통합교육의 양적·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하여, ‘제7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8~2032)에는 특수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각급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116.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교육 협력 선도 학교⁶³⁾와 일반학교 교원 대상 통합교육 연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급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매년 600개 이상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여 2년간 총 1,371개의 특수학급을 확충하였다.⁶⁴⁾

※ 부록 표 47, 48

질의사항 23 항에 대한 답변

장기체류자 및 미등록 미성년자에 대한 자격 요건 확대

117. 정부는 2025년 3월 종료 예정이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 시행하면서, 구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 하였다. 이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요건을 충족한 아동뿐만 아니라,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부록 표 49

이주아동·미등록 아동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118. 정부는 2023년 10월 「초·중등교육법」 개정⁶⁵⁾하여 이주아동·미등록 아동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교육부와 법무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6~17세 자녀가 있는 중도입국·난민 부모에게 다국어로 입학 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5개 언어⁶⁶⁾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를 관련 기관⁶⁷⁾에

62) 정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에 따라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과제별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63) 정다운학교, 2025년 284교

64) 13,287개 학급(‘23) → 14,658개 학급(‘25)

6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66)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몽골어, 크메르어, 태국어, 아랍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보급하여 아동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학교가 외국인 아동의 입학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 국적 학생 학적 관리 도움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계획

119.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교육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제 목적이 아닌,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교육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이러한 개별학생 교육지원이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되도록 해설서를 개발·보급하였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24.10.)을 통해 즉시조치가 필요한 상황별 지원 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문화권

질의사항 24항에 대한 답변

장애인

120. 정부는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업무 전담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23. 10.)과 장애예술인 표준 전시장인 ‘모두미술공간’(‘24. 12.)을 개관하였다.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무대기술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운영 등 접근 가능한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 부록 표 50

이주민, 난민 및 언어적 소수자

121.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부터 지원대상 자녀의 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하고, 이중언어 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자녀가 부모의 모국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교실’을 신설·운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⁶⁸⁾ 올해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뿐 아니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미등록

67) 시·도교육청,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대사관,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배포

68) (2022) 128,619명 - (2023) 139,040명 - (2024) 429,209명

포함)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122. 정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을 통해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5차 국가보고서 문단 109-114에 기술하였다.

※ 부록 표 51, 52

질의사항 25항에 대한 답변

1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로 인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한, 확증편향, 사회구조적 차별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천서비스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⁶⁹⁾ 아울러, 최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조치 절차 및 이용자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되었다.⁷⁰⁾ 이에 따라 플랫폼의 삭제·차단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등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될 예정이다.
124.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25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15-19세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의 관람률이 감소하였다. 40대가 7.1%p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70세 이상과 20대 간 관람률 격차는 2024년 68.3%p에서 2025년 66.7%p로 감소하였다.

※ 부록 표 53

69) 관련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건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있다.

70) 2026. 1. 7. 개정, 7. 7. 시행 예정

부 록

1. 사회권규약상의 권리 관련 법관연수 실시내역 (2023.6.~2025.6.)

법원은 2년간 장기 연구를 거쳐 2023년 '국제인권법 이론과 실무'를 발간, 법관들에 공유하고, 2026년 국제규약 관련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법관 및 직원의 국제인권조약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

기간	연수명	강좌 구성
2023. 6. 26. ~ 6. 27.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아동·장애인 진술의 특수성,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등
2024. 3. 4. ~ 3. 5.	소년보호재판실무	소년보호재판 운영실무, 집행감독사건의 실무와 소년조사관의 활용 등
2024. 3. 6. ~ 3. 7.	가정보호·아동보호재판실무	가정보호재판의 운영실무, 아동보호재판의 운영실무 등
2024. 3. 11. ~ 3. 13.	노동사건실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관한 판례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갱신기대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
2024. 3. 20. ~ 3. 22.	지식재산권소송실무	지식재산권의 개요, 저작권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
2024. 3. 27. ~ 3. 29.	가사재판실무	가사소송실무, 자녀 중심의 가사재판과 심리전문가 제도의 활용 등
2024. 5. 9. ~ 5. 10.	지식재산권소송의 주요 쟁점	부정경쟁방지법의 동향과 쟁점, 영업비밀 침해소송 주요 판결 소개 등
2024. 6. 10. ~ 6. 11.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아동·장애인 진술의 특수성,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등
2025. 3. 11. ~ 3. 12.	소년보호재판실무	소년보호재판 운영실무, 집행감독사건의 실무와 소년조사관의 활용 등
2025. 3. 13. ~ 3. 14.	가정보호·아동보호재판실무	가정보호재판의 운영실무, 아동보호재판의 운영실무 등
2025. 3. 17. ~ 3. 19.	노동사건실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관한 판례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갱신기대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
2025. 3. 24. ~ 3. 26.	지식재산권소송실무	지식재산권의 개요, 저작권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
2025. 3. 31. ~ 4. 2.	가사재판실무	가사소송실무, 자녀 중심의 가사재판과 심리전문가 제도의 활용 등
2025. 5. 19. ~ 5. 20.	국제인권법과 법관	국내 및 국제 인권관련법 숙지, 법관의 인권의식 고취 등

기간	연수명	강좌 구성
2025. 5. 29. ~ 5. 30.	지식재산권소송의 주요 쟁점	부정경쟁방지법의 동향과 쟁점, 영업 비밀 침해소송 주요 판결 소개 등
2025. 6. 9. ~ 6. 10.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장애 관련 판례의 개관, 형사 정신감정의 실제, 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방안 등
2025. 6. 12. ~ 6. 13.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아동·장애인 진술의 특수성,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등

2. 검사 인권교육 현황 (2023.3. ~ 2026.3.)

연도	과정명	교육기간	교과목명	인원
2023	신임검사 통합교육	5.~10.	양성평등	174
			성폭력 피해자 조사 접근법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필수과정	3.~11.	인신매매 수사실무	26
	아동학대 성폭력 전담검사 전문성 강화 과정	3. 13.~3. 15.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58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4.~5.	양성평등	28
	경력검사 리더십 과정	5. 15.~5. 19.	소수자 보호와 검사의 역할	9
	장애인전담검사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6.1.~6.2.	인권을 기반으로 장애보기,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의 이해 등	22
	외국인·다문화·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11. 9.~11.10.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보는 인권, 인권의 이해 등	19
2024	저년차검사 역량강화 필수과정	11. 20.~11. 24.	성폭력피해아동 및 발달장애인 조사접근법	7
	인권감수성향상	3. 7.~3. 8.	북한 이탈주민이 바라보는 인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43
	신임부서장과정	3. 11.~3.1 5.	양성평등과 인권 등	13
	평생검사 과정	3. 25.~3. 29.	양성평등	7
	형사부전문화과정 (성폭력·아동학대)	4. 15.~4. 17.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	27
	신임부서장과정	9. 2.~9. 5.	양성평등과 인권	13
	인권감수성향상	12. 5.~12. 6.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연극으로 보는 인권감수성 등	27
	신임검사 통합교육과정	5. 1.~10. 18.	양성평등과 조직문화 피해자 지원 등	145
	검사 맞춤형 인권교육	3. 22.	인권 친화적 조사를 위한 실습 및 피드백	8

	검사 맞춤형 인권교육	5. 3.	인권 친화적 조사를 위한 실습 및 피드백	11
	검사 맞춤형 인권교육	10. 7.	인권 친화적 조사를 위한 실습 및 피드백	4
2025	검사 임용후보자 교육과정	3. 5. ~ 4. 18.	직무윤리 사례 토론	91
	신임검사 통합교육과정	5. 8.~10. 24.	직무윤리사례 토론	139
	인권감수성향상	3. 6.~3. 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38
	전결검사 역량강화 과정	3. 10.~3. 14.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12
	형사부 전문화과정 (성폭력,아동학대)	4. 14.~4. 16.	불법영상물 삭제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성폭력범죄에서피해자보호	26
	형사부 전문화 과정 (강력·폭력)	4. 17.~4. 18.	인신매매방지와 국제형사협력	24
	전결검사 역량강화 과정	9. 1.~9. 5.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7
	신임부서장 과정	12. 8.~12. 12.	양성평등과 인권 헌법가치와인권수사	21
	검사 맞춤형 인권교육	3. 14.	인권 친화적 조사를 위한 실습 및 피드백	6
	검사 맞춤형 인권교육	4. 4.	인권 친화적 조사를 위한 실습 및 피드백	6
2026	인권감수성 향상	3. 12.~3. 13.	발달장애인에대한이해, 인권의이해	23
	신임부서장 과정	3. 16.~3. 20.	양성평등과 인권	23

3. 사회권규약상 권리를 원용해 내린 주요 판례

연번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자	사건명
1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038	2025. 11. 3.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2	부산고등법원	2023나12763	2024. 9. 5.	호봉정정확인 및 임금 등 청구의 소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10186	2024. 8. 16.	임금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2508	2023. 12. 8.	호봉정정확인 및 임금 등 청구의 소
5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917	2023. 9. 15.	임금

○ 사회권규약 제9조, 제12조 관련 판례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2025. 11. 13. 선고 2024구합85038 판결에서, '국제법 존중의무'라는 표제 아래 사회권규약의 비준, 그 취지, 제2조, 제9조 및 일반논평 제19호의 내용을 실시

하고 사회권규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합리성 심사가 요청된다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조치를 개시하고, 체류자격 연장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거나 불허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권규약 제9조, 제12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4.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정보

사회권규약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는 제5차 국가보고서 및 쟁점목록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보고서 작성과 관련 정책 검토에 참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1월에 사회권위원회의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을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인권전문가와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7월 각 부처에 4차 최종견해 이행을 요청하였다. 또한 2023년 대한민국 5차 국가보고서 작성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는 등 국가 보고, 이행, 후속조치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쟁점목록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전 최종견해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최종견해 18(a)

2026년 3월 기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되어있다.

○ 최종견해 18(b)

정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에 기업과 인권 분야를 다루는 별도의 장(chapter)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강화'에 관련 정책과제들을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국제규범에 따라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작성한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2021),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업 인권 침해 사례에서의 구제 접근 해석 안내서」의 한국어판(2025)을 발간 및 배포하였다.

또한 기업과 인권 관련 포럼, 세미나 등을 진행하여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인권실사 의무 강화 등 국제규범과 정책동향을 살피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

하고 있다.

연도	행사명
2020	제1회 기업과 인권포럼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의 실천 방안 및 정부의 역할'
2021	제2회 기업과 인권포럼 '보호 존중 구제의 이행: ESG시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과제'
2022	기업과 인권 세미나 'ESG 담론 확산 과정에서의 기업과 인권 국내 이행방안'
2025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위기 속에서 인권경영 행동 촉진을 위한 스마트믹스의 강화'
2026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 최종견해 18(d)

한국 NCP는 2023년 6월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및 조정절차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2024. 1월 한국 NCP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한국 NCP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7건의 이의신청사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4건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3.12월 종결된 샤넬코리아 사건에서는 당사자 합의를 이루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NCP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NCP의 포용성 향상을 위해 2025년 12월 기업계·노동계·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NCP 자문기구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였으며, 2025년 6월부터 NCP 회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NCP 활동의 투명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2023년부터 매년 1~2회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기업책임경영 세미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및 NCP 활동을 기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5. 2035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CO₂eq, 괄호안 값은 20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18	2024	2035 NDC			
				△53%		△61%	
				배출량 (’18比 감축률)	감축량 (’24比)	배출량 (’18比 감축률)	감축량 (’24比)
순배출량		742.3	651.4	348.9	△302.5	289.5	△361.9
배출	전력	283.0	218.3	88.3 (△68.8%)	△130.0	70.0 (△75.3%)	△148.3
	산업	276.3	250.9	209.1 (△24.3%)	△41.8	190.6 (△31.0%)	△60.3
	건물	52.1	43.6	24.2 (△53.6%)	△19.4	22.8 (△56.2%)	△20.8
	수송	98.8	97.5	39.3 (△60.2%)	△58.2	36.8 (△62.8%)	△60.7
	냉매	23.1	35.0	27.4 (+18.6%)	△7.6	25.5 (+10.4%)	△9.5
	농축 수산	27.6	25.6	20.0 (△27.5%)	△5.6	19.5 (△29.3%)	△6.1
	폐기물	19.4	17.5	9.2 (△52.6%)	△8.3	9.0 (△53.6%)	△8.5
	탈루	3.7	3.2	2.6 (△29.7%)	△0.6	2.4 (△35.1%)	△0.8
	수소	0	0	8.1	+8.1	6.5	+6.5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6	-40.2	-38.3	+1.9	-39.3	+0.9
	CCUS	0	0	-11.2	△11.2	-20.3	△20.3
	국제 감축	0	0	-29.8	△29.8	-34.0	△34.0

6.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사업 유형

번호	사업유형명		세부내용	지원대상 및 지역
1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 폭염대응 실내 열환경 개선 • 건물 옥상·지붕·외벽에 차열페인트 도장	개별 취약가구, 취약계층 이용시설
2	야외 근로자 쉼터 설치사업	농촌형 쉼터(에너지 자립형) 설치사업	▶ 폭염·한파 대응 농촌형 쉼터(에너지자립형) • 대규모 농경단지 내 길이 6m × 폭 2.6~3m × 높이 2.4~3m 규격의 휴게시설 설치(접근성 및 편의성 고려)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 * 태양광 발전의 경우 약 3kW 설비용량	야외 농업근로자
		야외 공공근로자 쉼터 설치사업	▶ 폭염·한파 대응 쉼터(고정형) • 고정형 쉼터로 정수물품 배정 불필요 • 인근 전력망 연결을 통한 전력공급 가능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 * 태양광 발전의 경우 약 3kW 설비용량	공원 등 한정된 공간범위 내 야외 공공근로자
		야외 공공근로자 이동식 쉼터 설치사업	▶ 폭염·한파 대응 이동식 쉼터(도로주행형) • 차량용 트레일러 구조물(차량 정수 배정 필수) •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연계 활용	이동이 필요한 야외 공공근로자
3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		▶ 폭설·한파 취약지 결빙 방지사업 • 경사진 골목길, 계단 등 취약지역 보행로·이면도로에 열선, 발열섬유 등 시공	취약계층 밀집지 내 결빙 취약지
4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		▶ 폭염 쉼터 조성사업 • 그늘조성, 녹지·식재 조성, 차열페인트도장(시설·장비표면), 쿨링설비(물입자 분사시설 등), 음수시설, 자연통풍 형성, 기존시설·구조물 재배치 등 복합 적용	취약계층 밀집지 내 어린이놀이터, 공원, 광장 등
5	녹색공간 조성사업		▶ 건물 녹화조성 • 옥상녹화, 벽면녹화(부착식), 그린커튼 등 3종	공공성을 갖춘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6	소규모 사업장 주변지역 적응인프라 조성사업		▶ 공장·주거 혼재 지역에 적응시설 복합 조성 • (환경오염·폭우) 그린인프라·LID사업(녹지·식생, 침투·저류 등), 생태복원(훼손지, 우수지 등), 기타시설 등 복합 적용 • (주거개선) 차열페인트 시공, 녹화 등 복합 적용 • (폭염·한파) 마을주민·근로자 이용 쉼터 조성(놀이터 등), 마을 내부·주변부 녹지·식생 조성, 결빙취약지 개선 등 • (물순환) 생태보행로(녹지대+빗물저류), 식생수로 조성	개별입지 공장 집약지 내 공장·주거 혼재지 또는 노후산업/공업단지와 주거지 인접지역
7	지방자치단체 제안		▶ 문제해결을 위한 신규사업·기술 발굴·제시 ※ 타 사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은 제안대상에서 제외	-

7. 상대적 빈곤율

(단위 : %)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50%이하)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60%이하)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2015	19.7	17.4	24.8	23.6
2016	20.0	17.4	25.2	23.5
2017	19.9	17.0	24.9	23.0
2018	20.2	16.5	25.1	22.5
2019	21.0	16.1	26.1	22.2
2020	21.7	15.1	27.1	21.5
2021	21.1	14.8	26.3	21.0
2022	20.2	14.9	25.2	20.9
2023	19.9	14.9	25.1	21.0
2024	20.9	15.3	25.8	21.3

8. 소득 상위10%-하위50% 자산 비율 및 팔마비율⁷¹⁾

(단위 : 배)

	상위10%와 하위50% 보유 자산 간의 비율*	팔마비율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2015	-	1.79	1.40
2016	-	1.87	1.43
2017	1.09	1.90	1.42
2018	1.11	1.86	1.34
2019	1.16	1.89	1.31
2020	1.11	1.90	1.26
2021	1.14	1.89	1.25
2022	1.14	1.80	1.23
2023	1.16	1.77	1.22
2024	1.28	1.84	1.23

* 해당연도 가구 소득 분위에 따른 익년 3.31일 기준 자산으로 계산, 소득10분위별 자산은 2017년 이후 자료에 한하여 작성 공표

71) 균등화 시장소득 또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

9. 국내총생산 및 1인당 GDP 추이

단위	국내총생산 (명목)		국내총생산 (실질)	1인당 국내총생산 (명목)	
	십억원	억달러	십억원	만원	달러
2013	1,570,938.2	14,345.9	1,732,287.4	3,115.2	28,447.9
2014	1,638,484.8	15,556.9	1,787,974.9	3,228.8	30,656.0
2015	1,740,776.0	15,384.8	1,840,189.0	3,412.3	30,157.5
2016	1,833,026.6	15,795.1	1,898,551.1	3,578.9	30,839.2
2017	1,934,233.9	17,104.4	1,963,732.0	3,765.9	33,301.7
2018	2,006,974.5	18,240.2	2,026,102.4	3,890.6	35,359.6
2019	2,040,594.3	17,506.1	2,072,982.4	3,942.0	33,818.5
2020	2,058,466.5	17,443.9	2,058,466.5	3,971.1	33,651.9
2021	2,221,912.9	19,415.2	2,153,422.9	4,291.9	37,503.1
2022	2,323,781.5	17,986.6	2,212,158.9	4,497.1	34,808.8
2023	2,408,687.4	18,451.6	2,247,177.7	4,657.8	35,681.0
2024	2,556,857.4	18,745.6	2,292,202.4	4,940.7	36,222.6

※ 출처: 한국은행, <https://ecos.bok.or.kr>, 2025.12.19. 기준

10. 국가채무(D1) 및 일반정부 부채(D2)

국가채무(D1)

(단위: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채무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6	970.7	1,067.4	1,126.8	1,175.0
- GDP 대비	32.5	34.0	34.2	34.1	33.9	35.4	41.1	43.7	45.9	46.8	46.0

일반정부 부채(D2)

(단위: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정부 부채	620.6	676.2	717.5	735.2	759.7	810.7	945.1	1,066.2	1,157.2	1,217.3	1,270.8
- GDP 대비	37.9	38.8	39.1	38.0	37.9	39.7	45.9	48.0	49.8	50.5	49.7

11. 조세를 통해 창출된 공공수입의 GDP 대비 비중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조세수입의 GDP* 대비 비중	16.6	17.4	17.9	18.8	18.8	18.8	20.6	22.1	19.0	17.6
총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대비 비중	22.6	23.5	24.1	25.2	25.7	26.2	27.9	29.7	26.9	25.3
법인소득세* 수입의 GDP 대비 비중	3.0	3.2	3.4	4.0	4.0	3.2	3.6	5.0	3.9	2.8

* GDP 신계열(2020년) 기준

**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 자료원 : OECD Data Explorer, Revenue Statistics

12.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통계

< 조세포탈 범칙조사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조세포탈 범칙조사	
	조사건수	부과세액
2015	364	1,039,014
2016	346	1,554,247
2017	276	1,092,987
2018	386	1,531,480
2019	313	1,531,864
2020	217	1,243,556
2021	152	815,069
2022	128	858,230
2023	126	641,042
2024	174	483,194

※ 출처: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

13. 최근 10년간 상위 5개 항목의 조세지출 실적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순위	조세지출 내역	감면액
2015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8,158
	2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24,112
	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21,990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7,889
	5	연금보험료 공제	16,150
2016	1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25,978
	2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4,094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945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8,643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444
2017	1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28,185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5,468
	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5,323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603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537
2018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34,999
	2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27,757
	3	면세 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6,919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3,793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2,214
2019	1	근로장려금 지급	49,256
	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38,833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0,457
	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8,578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3,178
2020	1	근로장려금 지급	44,826
	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43,630
	3	연금보험료공제	33,067
	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27,985
	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7,340
2021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47,542
	2	근로장려금 지급	46,035
	3	연금보험료공제	34,968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1,882
	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27,429
2022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54,607
	2	근로장려금	45,036
	3	연금보험료공제	38,141
	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7,231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1,675
2023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63,083
	2	근로장려금	47,281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6,302
	4	연금보험료공제	41,128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9,458
2024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69,020
	2	근로장려금	47,122
	3	연금보험료공제	44,377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0,884
	5	통합고용세액공제	38,106

14. 최근 10년간 상위 5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 현황

* 항목별 수혜자 귀착은 20년 실적부터 산출

○ 2020년

순 위	항목	개인		법인				구분 곤란	합계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중소	중견	상출	기타		
1	근로장려금 지급	44,826 (100.0)	-	-	-	-	-	-	44,826 (100.0)
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22,108 (50.7)	21,522 (49.3)	-	-	-	-	-	43,630 (100.0)
3	연금보험료공제	18,620 (56.3)	14,447 (43.7)	-	-	-	-	-	33,067 (100.0)
4	면세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액공제특례	-	-	25,154 (89.9)	579 (2.1)	1,118 (4.0)	1,134 (4.0)	-	27,985 (100.0)
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	13,926 (50.9)	2,267 (8.3)	9,616 (35.2)	1,531 (5.6)	-	27,340 (100.0)

○ 2021년

순 위	항목	개인		법인				구분 곤란	합계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중소	중견	상출	기타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24,958 (52.5)	22,584 (47.5)	-	-	-	-	-	47,542 (100.0)
2	근로장려금 지급	46,035 (100.0)	-	-	-	-	-	-	46,035 (100.0)
3	연금보험료공제	20,758 (59.4)	14,210 (40.6)	-	-	-	-	-	34,968 (100.0)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에 대한 소득공제	23,396 (73.4)	8,486 (26.6)	-	-	-	-	-	31,882 (100.0)
5	면세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액공제특례	-	-	24,492 (89.3)	515 (1.9)	1,158 (4.2)	1,265 (4.6)	-	27,429 (100.0)

○ 2022년

순위	항목	개인		법인				구분 곤란	합계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중소	중견	상출	기타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28,059 (51.4)	26,548 (48.6)						54,607
2	근로장려금	45,036 (100.0)							45,036
3	연금보험료공제	22,442 (58.8)	15,700 (41.2)						38,141
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5,878 (42.6)	2,859 (7.7)	16,869 (45.3)	1,625 (4.4)		37,231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2,636 (71.5)	9,039 (28.5)						31,675

○ 2023년

순위	항목	개인		법인				구분 곤란	합계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중소	중견	상출	기타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31,784 (50.4)	31,298 (49.6)						63,083
2	근로장려금	47,281 (100.0)							47,281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6,232 (35.1)	3,150 (6.8)	24,836 (53.6)	2,084 (4.5)		46,302
4	연금보험료공제	24,621 (59.9)	16,507 (40.1)						41,128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8,589 (72.5)	10,870 (27.5)						39,458

○ 2024년

순 위	항목	개인		법인				구분 곤란	합계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중소	중견	상출	기타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34,379 (49.8)	34,641 (50.2)	0 (0)	0 (0)	0 (0)	0 (0)	0 (0)	69,020
2	근로장려금	47,122 (100)	0 (0)	0 (0)	0 (0)	0 (0)	0 (0)	0 (0)	47,122
3	연금보험료공제	26,592 (59.9)	17,784 (40.1)	0 (0)	0 (0)	0 (0)	0 (0)	0 (0)	44,377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9,713 (72.7)	11,172 (27.3)	0 (0)	0 (0)	0 (0)	0 (0)	0 (0)	40,884
5	통합고용세액공제	0 (0)	0 (0)	34,254 (89.9)	2,389 (6.3)	562 (1.5)	901 (2.4)	0 (0)	38,106

15. 공공사회보장지출

대한민국의 공공사회보장지출 수준이 OECD 평균 이하지만, 최근 10년간(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2.3%로 OECD(5.7%)보다 약 2배 이상 빠르며,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2040년에는 보건과 연금지출의 증가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의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지출구조와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포럼을 통해 복지지출의 효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다.

< 9대 정책영역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

(단위: 조 원, %)

영역	보건	노령	가족	기타 사회정책	실업	근로 무능력	적극적 노동시장	주거	유족	계
규모	113	74.6	35.9	31.8	30.6	19.4	14.1	9.7	8.9	338.2
비중	33.4	22.1	10.6	9.4	9.1	5.7	4.2	2.9	2.6	100

< GDP 대비 공공사회보장지출비율 추이('11~'21) >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율	7.3	7.8	8.3	8.6	9.1	9.2	9.5	10.2	11.4	14.9	15.2

< OECD 주요국 공공사회복지지출 비교 >

(단위: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일본	영국	미국	한국	OECD 평균
GDP 대비 비중(21)	32.7	29.8	28.9	26.3	25.4	24.4	21.6	15.2	22.1
연평균 증가율 (2011-2021)	2.6	2.3	4.3	3.9	2.6	3.1	5.6	12.3	5.7

16. 이주민 건강보험료 관련

- 2019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중단된 이주민 현황: 91,560세대 (2025년 11월말 기준 누적현황)
- 2025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체납을 하더라도 보험급여 혜택을 유지하게 된 이주민 현황: 1,030세대 (2025년 11월말 기준 누적현황)

17. 아이돌봄 이용가구 및 돌보미 현황

(단위 : 가구,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9.
이용가구	59,663	71,789	78,212	86,100	118,126	127,448
아이돌보미	24,469	25,917	26,675	28,071	29,635	30,631

18.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현황

(단위 : 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65	157	253	522	956	1,363	1,828	2,802	3,328	3,833	4,340	4,918	5,415	5,911	6,502	6,971

19. 경력단절예방 지원실적

(‘24.12월 기준, 단위 : 개소, 명, 개사)

연도	운영 센터수	운영실적	
		재직여성	기업
2024	80개소	75,100	4,352
2023	80개소	85,372	2,888

2022	75개소	73,491	3,357
2021	75개소	67,897	2,375
2020	60개소	47,887	1,801

20. 직업교육훈련 실적

(‘24.12월 기준, 단위 : 건, 명)

연도	운영과정수	교육인원(a)	수료인원(b)	수료율(b/a)	취업인원(c)	취업률(c/b)
2024	723개	13,575	13,019	95.9%	9,463	72.7%
2023	715개	13,381	12,807	95.7%	9,348	73.0%
2022	718개	12,586	11,919	94.7%	8,892	74.6%
2021	738개	12,573	11,998	95.4%	8,800	73.3%
2020	658개	11,023	10,532	95.5%	7,770	73.8%

21. 새일여성인턴 실적

(‘24.12월 기준, 단위 : 명)

연도	새일여성인턴 연계현황				인턴종료 후 취업현황			고용유지율	
	연계	종료(a)	연계 중	중도탈락	취업(b)	미취업	취업률(b/a)	6개월	12개월
2024	9,825	7,823	1,363	639	7,581	242	96.9%	77.9%	63.6%
2023	9,253	7,202	1,438	613	6,984	218	97.0%	75.5%	57.7%
2022	10,145	8,298	1,085	762	8,027	271	96.7%	75.6%	56.4%
2021	11,761	9,611	1,236	914	9,312	299	96.9%	75.8%	56.2%
2020	6,945	5,812	628	505	5,658	154	97.4%	72.9%	54.7%

22. 일·육아지원 제도 개선

- (1) 2024년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확대(3+3 부모육아휴직제)로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 (2) 2025년 육아지원 3법 시행('25. 2.) 등 제도 개편,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배 확대(10일→20일, 분할횟수 1회→3회)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 (3)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2024년 월 최대 150만원→ 2025년 월 최대 250만원)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기간 확대(최대 2년 → 최대3년)
-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200만원 → 220만원)⁷²⁾
- (6) 육아휴직 따른 인력공백 보충 위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월 120만원)
- (7)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지원금신설(월 20만원)

72) 육아기 월 최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3.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분야별 추진 실적

(단위 : %)

소관 부처	추진 분야	2024년 실적	2027년 목표
인사처	① 고위공무원	12.9	16.3
	② 본부과장급(4급 이상)	30.8	30.0
행안부	③ 지방 과장급(5급 이상)	34.7	32.2
기재부	④ 공공기관 임원	20.4	26.2
	⑤ 공공기관 관리자	32.3	34.5
행안부	⑥ 지방공기업 관리자	14.5	15.5
교육부	⑦ 국립대 교수	21.4	22.9
과기부	⑧ 4대 과학기술원 교원	13.1	14.1
국방부	⑨ 군인 간부	10.9	15.3
경찰청	⑩ 일반경찰	15.9	17.0
	⑩-1 관리직	7.8	8.0
해경청	⑪ 해양경찰	17.6	17.9
	⑪-1 관리직	4.8	4.2
여가부	⑫ 정부위원회	40.1	40.0

24. 「정치자금법」 제26조에 따른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도⁷³⁾

기 준	배 분 방 법	비 고
① 40%이상 추천한 정당	총액의 40%를 40%는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원석수 비율 40%는 최근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20%는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지급	
② 30%이상 40%미만 추천한 정당	총액의 30%를 ①의 기준에 따라 지급	①의 기준에 따른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③ 20%이상 30%미만 추천한 정당	총액의 20%를 ①의 기준에 따라 지급	②의 기준에 따른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④ 10%이상 20%미만 추천한 정당	총액의 10%를 ①의 기준에 따라 지급	③의 기준에 따른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음

73)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 지급

25. 사이버성폭력범죄 단속 현황

단속기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구속)	검거율
'23. 11. ~ '24. 10.	3,270건	2,273건	2,406명 (172)	69.5%
'24. 11. ~ '25. 10.	4,413건	3,411건	3,557 명(221)	77.3%
전년 대비	▲ 35.0%	▲ 50.1%	▲ 47.8%	▲ 7.8%

26. 위장수사 시행 현황

구분	실시건수	검거인원
'23. 11. ~ '24. 10.	194건	529명(구속 34)
'24. 11. ~ '25. 10.	256건	913명(구속 36)
증감율	+62건 (▲ 32.0%)	+384명 (▲ 72.6%)

27. 젠더폭력 관련 통계

○ 교제폭력 검거 통계

구분	2024년	2025년
교제폭력 검거인원	14,900	미산출

○ 디지털성범죄 통계

(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	9,700	13,041	19,028	16,306	15,411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2,047	5,067	10,563	8,004	5,85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4,881	5,541	5,876	5,490	5,829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31	259	170	168	550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등)	120	546	821	970	82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2,621	1,628	1,598	1,674	2,351

※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연도별)

28.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신설

연도	주요 조치	세부 내용
2025	생계비 지급액 인상 및 지원기간 연장	- 지급액 인상(60만원→70만원) - 지원기간 2배 연장(최대 6개월→최대 12개월)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신청 후 지급 전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48개월간 분할 지급 가능
	범죄피해 구조금 증액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 수 및 상한을 상향 → 지급액 20% 증액
	결혼이민자 구조금 지급 근거 마련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 지급
2026	긴급생활 안정비 신설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범죄피해자 신속 지원 → 도시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상당액인 350만 원을 1회 지급
	범죄피해 구조금 증액	유족구조금 하한액을 8,200만원으로 종전(약, 1600만원) 대비 약 5배 인상
	365스마일 운영	학업·생업 또는 물리적 거리, 신체·정신적 상처 등으로 스마일센터 방문이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위해 365스마일 운영

29.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통계(2023년 12월 1일 이후)

기관명	실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적 지원 467건, 약 226,692천 원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 대상 심리치유 지원 174,070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810건, 소송구조 464건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의뢰 17건(피해자 188명)

30.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경과

법무부는 성폭력, 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지원하여 피해 회복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살인, 강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연도	개정 경과
2013	성폭력처벌법 개정,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행
2014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지원 실시
2021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지원 실시
2023	인신매매방지법 개정, 인신매매범죄 피해자 지원 실시
2024	스토킹처벌법 개정, 스톱킹범죄 피해자 지원 실시

31.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 교육부

초·중·고 학교교육에서 법정 의무 폭력예방교육 시간 외에 별도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시간을 편성·운영하도록 권장하여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 디페이크 불법영상물 실태 및 청소년 인식조사'와 대학 대상 '디페이크 성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하였다. 초·중·고등학교별 대상별 (관리자, 교원, 교육행정직) 맞춤형 연수를 확대하고, 디지털 성폭력 대응·예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다.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대응 교육이 가정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양육자 대상 예방 교육 영상, SOS 가이드, 카드뉴스와 같은 교육·상담·홍보자료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부모 전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였다.

대학 내 성사안 처리 담당자 대상 대응교육을 실시하고, 각 대학의 총장 대상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안 발생 시 엄정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대학 구성원을 위한 예방 콘텐츠 제작·배포를 추진하는 등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다.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성평등가족부

특수학교·학급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매년 600회 정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지역주민 등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에 교제폭력 내용을 포함하였다.

32. 이주노동자 지원

○ 권익 보호·상담

- 다국어 상담원(28개 지방관서): 행정 업무 지원·권리 구제 연계, 주말 상담 운영
-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 개소('25. 9.)

○ 한국어 교육 실시

- 장소: 9개소('23) → 47개소('25)
- 시간: 162,804시간('23) → 220,558시간('25)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

- 고충 상담·한국어 교육 등
- 9개소('25) → 19개소('26)

33.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생 보호 관련 법령 개정

연도	개정 법령	개정 내용
2020. 3.	「산업안전보건법」	아래와 같은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함 - 안전 및 보건 조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급박한 위험시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 물질안전 보건자료 게시, 임시건강진단 명령, 산업재해 보고 등
2023. 1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근로기준법」 준용 범위를 확대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함 - [기존] 제52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 [추가 준용]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2025. 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우수현장실습체 지정 및 지원과 노동인권·권익보호의 실효성 향상 위한 근거 마련

34.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생 보호 위한 조치

주요 조치	세부 내용
학교전담노무사	현장실습 운영 중 산업체 현장 방문 점검 강화 · 현장실습 산업체 사전 현장실사 및 기업 방문 점검(기업코칭) · 학교·학생 교육 및 자문 역할 수행

	- 배정 인원: 926명('23) → 974명('24) → 1,077명('25)
안전·권익보호 교육 강화	현장실습 단계별 안전·권익보호 교육 실시 및 현황 점검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전문 공통 교과 신설
AI 실습일지 위험감지 도입 ('24. 3 ~)	실습일지를 AI가 상시 분석, 위험 감지 시 학교에 자동 알림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담당자 정기회의 운영 - 교육부·시도교육청 특별 점검반 운영 - 시·도 교육청 모니터링 회의(매주 1회), 컨설팅 실시(570개교) - '24학년도 고위험 업종(끼임 관련 기계 보유 업체 등) 190여개 산업체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연계 안전점검	-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과 연계하여 참여기업 사전현장실사·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 건설·기계·전기 등 고위험 업종: 교육부·고용노동부 강화된 기준으로 공동 관리 (기업 교육) 노동법 준수 취약기업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 및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소규모·영세 사업장 교육) 노동법 교육사업 참여 독려
현장실습 참여기업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등 안전이 담보된 기업으로 대상 기업 기준 강화(위험성 평가 의무화 정책과 연계, 단계적으로 실시 사업장으로 제한, 고용부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장 정보 공유)
운영 매뉴얼 및 연수	참여주체별(학교용·기업용) 맞춤형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교원·기업 관계자 대상 연수 실시
현장실습 컨설팅 운영	학교·기업 대상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등 현장 밀착 지원 - 학교 현장실습 운영계획 및 현황 지도·점검 - 기업현장교사 및 관계자 기업코칭 - 기업 현장실습 상황 점검 및 학생 면담

35. 2023~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 및 목표인원

구분	2023	2024	2025 (10월 기준)	2026 목표
인원	29.6만명	31.5만명	26.8만명	35.0만명

36. 임금관련 분배지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저임금근로자* 비중(%)	23.5	23.5	22.3	19.0	17.0	16.0	15.6	16.9	16.2	16.1
5분위 배율*(배)	5.41	5.24	5.06	4.67	4.50	4.35	4.35	4.45	4.50	4.42

* 저임금근로자 비중: 중위임금(3,406천원)의 2/3 미만자의 비중(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 5분위 배율: 상위 20% 평균임금 / 하위 20% 평균임금(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3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주요노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인상을 위해 `26년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예산으로 9,812억 원을 편성, 전년 대비 694억, 7.6% 증액하였다. 특히,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수 수준이 낮은 시설의 인건비 인상률을 더 높이는 등 차등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사용자 개념 <2호>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후단신설>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4호 라목>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삭제>
노동쟁의 개념 <5호>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 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손배청구 및 배상책임 제한 <제3조, 제3조의2>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案제3조의2(책임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40. 외국인 등록장애인수(체류자격별)

(`24.12.31. 기준)

체류자격분류	장애인수
합계	8193
난민인정자(F-2)	52
결혼이민자('11.12.15 이전)(F-2-1)	122
재외동포(F-4)	3283
한국영주권자(F-5)	1161
결혼이민자(F-6)	520
값없음	3055

41.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 주택 공급 현황

구분	계	공공임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기(5년이하)			
		소계	영구	50년	국민 임대	행복 주택	통합 공공	장기 전세	10년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통합 공공	5년	사원	
2024	197.2	193.1	22.5	11.5	61.2	18.1	0.3	4.1	17.2	23.6	34.5	4.1			
2023	191.8	187.0	22.4	11.4	60.7	16.9	0.2	3.9	16.9	22.0	32.6	4.8			
2022	186.3	180.8	22.1	11.3	60.0	14.3	-	3.8	17.6	20.8	30.9	5.5			

42. 공공임대 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임대료

구분	영구임대 (40㎡이하)	국민임대 (60㎡이하)	행복주택 (60㎡이하)	5·10년공공임대 (85㎡이하)
입주 자격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탈북자, 장애인 등(소득기준 有), 위안부, 한부모가족(소득 불문) (2순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	(우선: 87%)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 장애인 등 (일반: 1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50㎡이하는 전국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50㎡초과는 청약저축가입 필요	(일반공급) 젊은계층 80%, 고령자·주거급여는 2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대학생은 본인·부모·합계, 청년은 본인·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세대소득 기준 (산단형) 산단근로자(고령자(10%) 포함)	(특별) 신혼부부(소득 100%), 노부모부양자(소득 120%) 등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가입자 ※ 60㎡이하 주택은 소득요건 100%
	소득1~2분위	소득2~4분위	소득2~6분위	소득3~6분위
임대료 수준 (25)	시세의 30%	시세의 60~80%		시세의 90%
	평균 보증금 508만원	평균 보증금 2,356만원	평균 보증금 3,866만원	평균 보증금 5,097만원
	평균 월임대료 7.2만원	평균 월임대료 19.1만원	평균 월임대료 16.9만원	평균 월임대료 41.9만원

43. 입원유형별 주요 내용

구분	입원유형	주요 내용
자의 입원	자의입원 (제41조)	- 본인 의사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퇴원 가능
	동의입원 (제42조)	- 본인 신청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 신청 시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 가능 * 이로 인해 동의입원도 비자의 입원으로 보는 의견 있음
비자의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입원, 제43조)	- 자타해 위험성 + 입원치료 필요성 + 보호의무자 2인 이상 동의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시 진단입원 실시 → 2주 이내 서로 다른 소속의 두 번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시 2주 이상 입원 가능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해도 자타해위험성과 입원치료 필요성 있으면 퇴원 거부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제44조)	- 자타해 위험성 + 입원치료 필요성 + 시장·군수·구청장의 진단 의뢰 → 지정 정신의료기관 입원, 2주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2인 이상 일치 소견 필요 - 퇴원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사에 의해서만 가능
응급입원 (제50조)		- 자타해 위험 등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최대 3일) 3일 이내 입원(자의·비자의) 또는 퇴원 여부를 결정

44. 의료지원 현황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개소 등을 포함해 111개소의 의료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국비 기준으로 2024년 2,480백만원, 2025년 1,90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다. 한편, 2026년 국비 예산은 4,314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 2024년

구분	계	외국인근로자 (배우자, 자녀 포함)	난민 인정 신청자 (자녀 포함)	결혼이민자	노숙인
계	2,559	2,201	355	2	1
입원	1,049	949	98	1	1
외래진료	1,510	1,252	257	1	0

○ 2025년 (1~9월)

구분	계	외국인근로자 (배우자, 자녀 포함)	난민 인정 신청자 (자녀 포함)	결혼이민자	노숙인
계	1,164	801	361	0	2
입원	458	352	104	0	2
외래진료	706	449	257	0	0

45. 교육비 지원

지원항목	대상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연 502천원
	중학교	연 699천원
	고등학교	연 860천원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0~2세 부모 보육료	426천원~584천원
	3~5세 유아보육비·보육료	470천원~510천원
취약계층	장애아보육료	634천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최대 200천원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	초등학교	월 150천원
	중학교	월 250천원
	고등학교	월 350천원
	대학교	월 450천원
긴급위기 장학금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월 300천원 (10개월 간)

46. 사교육 관련 통계

① 학교급 및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

【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초등학교	82.7	82.5	83.5	69.7	82.0	85.2	86.0	87.7
중학교	67.4	69.6	71.4	67.3	73.1	76.2	75.4	78.0
고등학교	55.9	58.5	61.0	61.6	64.6	66.0	66.4	67.3

【 학교급·학년별 사교육 참여율(%) 】

구분	초							중				고			
		1	2	3	4	5	6		1	2	3		1	2	3
2017	82.7							67.4				55.9			
2018	82.5							69.6				58.5			
2019	83.5	86.8	86.6	86.2	82.5	82.0	76.8	71.4	72.9	70.6	70.6	61.0	64.5	62.3	56.4
2020	69.7	65.3	71.8	67.3	73.4	69.1	71.0	67.3	68.0	68.1	65.7	61.6	64.3	63.3	57.0
2021	82.0	83.3	83.1	85.8	81.7	81.4	76.7	73.1	74.1	73.7	71.6	64.6	68.0	66.2	59.8
2022	85.2	85.7	88.0	87.6	86.3	82.0	82.0	76.2	77.6	76.2	74.7	66.0	69.6	66.8	61.6
2023	86.0	87.7	88.9	89.7	86.9	83.8	80.0	75.4	76.9	76.2	73.0	66.4	69.5	68.4	60.7
2024	87.7	87.9	90.4	90.2	88.5	87.8	82.4	78.0	80.0	77.9	76.1	67.3	70.2	69.0	62.2

②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300만원 미만	13.0	13.5	14.6	13.8	15.8	17.8	18.3	20.5
300만원~ 400만원 미만	21.2	22.2	23.4	20.4	25.3	27.2	27.9	28.5
400만원~ 500만원 미만	27.4	27.9	30.0	26.9	33.2	35.1	35.3	36.6
500만원~ 600만원 미만	32.2	32.9	35.4	32.5	38.1	39.9	41.2	44.0
600만원~ 700만원 미만	36.5	37.3	40.4	37.2	44.4	46.9	48.4	49.1
700만원~ 800만원 미만	40.7	42.2	46.4	44.1	48.6	51.8	52.7	55.6
800만원 이상	48.3	50.5	53.9	52.6	59.3	64.8	67.1	67.6

학교급 및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모든 연도에서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도엔 월평균 사교육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47.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27,288(27.8)	28,233(27.2)	29,236(26.7)	30,390(26.3)	31,295(25.9)
일반학교	70,866(72.2)	75,462(72.8)	80,467(73.3)	85,220(73.7)	89,440(74.1)
계	98,154	103,695	109,703	115,610	120,735

48. 특수교육 현황

구 분	2023	2024	2025
특수교육대상자 수(명)	109,703	115,610	120,735
특수학교 수(교)	194	195	196
특수학급 수(학급)	13,287	13,931	14,658
특수교육교원 수(명)	25,599	27,084	28,445

49.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대책 운영 현황('21. 4. 19. ~ '26. 2. 28.)

(단위: 명)

구 분	합 계	아 동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
허가 현황	4,257*	1,753	2,141	363

* 국적별 : 몽골(2,098), 필리핀(308), 베트남(284), 나이지리아(138), 파키스탄(131), 기타(1,298)

50.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은 조성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반영하여 이동·시설·정보·의사소통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 공연장으로 조성되었다. ‘모두미술공간’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수어 전시해설, 발달장애인 등을 고려한 쉬운 프로그램북 제공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51.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추진 내용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실시	○ 유초등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운영 지원('16~'21년, 연간 4개교) ○ 교원의 문화다양성 역량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6년~) ○ 문화기관종사자, 문화콘텐츠제작자 등 전문인력 대상 직무연관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15년~) ○ 일반인 대상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연계 문화다양성 이해 강좌 운영('22년~)
문화다양성 주간 계기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추진	○ UN 지정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을 기념해 문화다양성 주간을 지정(5.21~5.27, 문화다양성법 제11조)하고,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15년~)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화 주체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지원	○ 이주민이 직접 기획·추진(14개국 교민회 참여)하는 문화다양성 축제 MAMF(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개최 지원으로 이주민의 문화권 보장 및 내·외국인 교류 증진('05년~)

52.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역량 강화 목적 교육

연도	개최 횟수	참여 인원
2023	5회	457명
2024	6회	609명
2025. 11	5회 (12월 개최 예정건 포함)	681명

53.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구분	직접 관람률(%)	
	2024	2025
전체	63.0	60.2
15-19세	77.8	79.9
20대	91.4	88.9
30대	85.0	83.2
40대	76.5	69.4
50대	55.5	55.2
60대	43.7	41.2
70대	23.1	22.2